

Cyber Branch-F 개설 및 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이 제공하는 'Cyber Branch-F'를 개설하고 이용하는데 따르는 '은행과 서비스 이용기업(이하 '기업'이라 한다) 간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 서비스 이용조건 및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Cyber Branch-F'란 '기업'의 효율적인 자금관리 및 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은행'이 대금수납, 대금지급 및 통합자금관리 등의 다양한 자금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종합자금관리 시스템을 말합니다.

제3조 (서비스 범위)

- ① '은행'이 '기업'에게 제공하는 'Cyber Branch-F'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Cyber Branch-F' 시스템 구축 : '기업'의 자금관리 업무에 맞춘 시스템 설계 및 개발
 2. 대금수납 서비스 : '기업'의 대금수납 업무에 맞춘 각종 수납수단 제공, 수납내역 대사 등 '기업'과 은행이 상호 협의한 서비스
 3. 대금지급 서비스 : '기업'의 대금지급 업무에 맞춘 각종 지급수단 제공, 거래결과 데이터 제공 등 '기업'과 '은행'이 상호 협의한 서비스
 4. 통합자금관리 서비스 : 각 은행 계좌통합관리(계좌잔액 및 거래내역 실시간조회), 자금의 모계좌 집중, 자금의 배분 등 '기업'과 '은행'이 상호 협의한 서비스
 5. 외환관리 서비스 : 외화예금조회, 수입대금송금, 신용장개설신청 등 '기업'과 '은행'이 상호 협의한 외환 관련 서비스
 6. 부가 서비스 : 법인카드관리 서비스 등 '기업'과 '은행'이 상호 협의하여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7. 운영지원 서비스 : 시스템 최적화 유지, 시스템 장애 시 복구 및 재설치, Client 프로그램의 유지 보수 등 '기업'의 원활한 서비스 이용을 위한 운영지원 서비스
- ② '은행'은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비스 종류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기업'의 동의나 요청이 있는 경우 서비스 종류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서비스 제공내역)

- ① '기업'이 'Cyber Branch-F'를 통해 이용할 서비스 종류 및 이용 수수료, 징수 방법은 'Cyber Branch-F' 개설 및 이용 신청서와 'Cyber Branch-F' 수수료 내역서 및 추가 신청서에 명시된 내용으로 합니다.
- ② '기업'이 'Cyber Branch-F' 개설 및 이용신청서와 'Cyber Branch-F' 수수료 내역서 및 추가 신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 서비스를 요청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추가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수수료)

- ① 기업인터넷뱅킹 등 각 서비스 별 개별 계약이나 별도의 이용신청에 의한 이체수수료 등 '은행'이 징수하는

수수료는 해당 수수료 징수기준을 적용합니다. 단, 'Cyber Branch-F 수수료내역서 및 추가 신청서' 등에 의하여 별도로 약정하는 경우 그에 따릅니다.

- ② 수수료 약정은 서비스 신청일로부터 1년 단위로 하며, 약정이 끝나는 날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수수료 변경 의사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됩니다. 단, 'Cyber Branch-F 수수료 내역서 및 추가 신청서' 등에 의하여 적용기간을 별도로 약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③ '은행'이 수수료를 변경할 경우 시행일 1개월 전까지 '기업'에게 서면 또는 서비스 화면에 '7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변경된 수수료를 시행일에 적용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통지하기로 합니다. '기업'은 이의가 있을 경우 시행일 7일 전까지 서면으로 이의 사실을 통지하기로 하며, 동 기간 내에 '기업'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변경된 수수료를 시행일에 적용합니다.

제6조 (서비스 중지 및 해지)

- ①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 서비스를 해지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 1. '기업'이 서비스 이용 해지를 요청한 경우
 - 2. '기업'이 본 약관을 위반하여 '은행'이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나, 1개월 이내에 해당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
 - 3. 제5조 제3항에 의거 '기업'과 '은행' 쌍방이 수수료에 합의하지 못한 경우
 - 4. '기업'의 이용수수료 연체가 발생한 경우
- ② 전항 제4호의 경우 '은행'은 별도 통보 없이 해당 서비스를 중지시킬 수 있으며 '기업'에게 그 사실을 신속하게 통보하도록 합니다.
- ③ 서비스를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해지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7조 (서비스 이용시간)

- ① 본 서비스의 이용시간 중 금융관련 서비스는 은행이 별도로 정한 인터넷뱅킹 이용시간에 따르며 금융관련 서비스 외 기타서비스는 별도로 정함이 없이 기업의 이용시간에 따릅니다. 단, 타 금융기관 등과 관련되는 거래는 해당 금융기관의 사정에 따라 예고없이 변경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 ② '은행'이 정기점검 또는 기술상의 필요에 의해 특정서비스 및 전체서비스의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은행'이 '기업'에게 사전통지 후 일시적으로 중지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서비스 원칙 및 의무)

- ① '기업'과 '은행'은 본 약관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의성실 및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 ② '기업'과 '은행'은 각 측의 시스템에 대한 보안대책을 강구합니다.
- ③ '기업'과 '은행'은 사고 발생을 인지하는 경우 이를 신속하게 조치하고 상호 통지합니다.

제9조 (기밀유지)

'기업'과 '은행'은 본 'Cyber Branch-F'서비스와 관련되거나 상호 정보교환 등 업무처리 과정에서 인지 또는

획득한 정보를 이 업무처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안됩니다. 만약 유출된 내용이 쌍방 혹은 어느 일방에게 손실을 입힌 경우에는 그 책임 있는 당사자가 책임을 지기로 합니다.

제10조 (프로그램 등의 소유권)

'Cyber Branch-F' 서비스를 위해 '은행'이 '기업'의 시스템에 설치한 제반 프로그램은 '은행'이 소유권을 갖습니다.

제11조 (손해배상)

'기업'과 '은행'은 본 약관의 위반이나, 기타 일방의 귀책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금전적, 물질적 손해를 입은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가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12조 ('은행'의 손실부담 및 면책)

'Cyber Branch-F'와 관련한 '은행'의 손실부담 및 면책은 '은행'의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제20조(손실부담 및 면책)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13조 (약관의 적용 및 변경)

- ① '기업'과 '은행'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서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된 사항이 약관에 우선하기로 합니다.
- ②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 중 일부 서비스에 적용되는 개별약관이 있는 경우에는 이 약관에 불구하고 해당 개별약관이 우선 적용됩니다.
- ③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전자금융서비스이용약관, 기업인터넷뱅킹서비스이용약관, 예금거래 기본약관, 대상계좌의 관련약관, 기타 관련된 업무의 약관이나 관계 법령을 적용하며, 법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관습에 의합니다.
- ④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일자 및 개정 사유를 명시하여 변경예정일 직전 1개월간 'Cyber Branch-F' 화면에 게시하여야 하고, 변경 내용이 '기업'에 불리한 경우에는 화면게시 외 서면,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변경전 최소 1개월 전까지 개별통지하여야 하며, '기업'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은행'은 '기업'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 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을 변경할 때에는 'Cyber Branch-F' 화면에 즉시 이를 게시(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서면,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개별통지하여야 합니다.
- ⑤ '기업'이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제4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 영업일까지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으며, 서비스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⑥ '은행'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약관의 변경내용을 게시하거나 통지할 경우, 제5항의 내용을 함께 통지합니다.

제14조 (분쟁해결 및 관할 법원)

- ① 이 약관의 해석과 관련하여 이견 또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당 관련 법규를 따르고 관련법규가 없으면 관습 및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하여 당사자간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기로 합니다.
- ② 이 약관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이 제14조 제1항에 따라 원만히 해결되지 아니한 경우 이와 관련된 소송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15조 (협의 및 합의서 등의 효력)

이 약관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으며, 필요 시 별도의 추가약정서 및 합의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추가할 수 있습니다.

부 칙(2010.10.4)

이 약관은 2010년 10월 4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2012.3.19)

이 약관은 2012년 3월 19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2015.7.13)

이 약관은 2015년 7월 13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2019.9.16)

이 약관은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2022.4.25)

이 약관은 2022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